

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

제정	1996. 3. 1	규칙 제 70호
개정	1998. 5. 6	규칙 제 134호
	1999. 11. 4	규칙 제 216호
전문개정	2001. 11. 10	규칙 제 284호
개정	2002. 12. 12	규칙 제 327호
	2005. 10. 5	규칙 제 424호(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)
	2007. 10. 5	규칙 제 552호
일부개정	2014. 11. 24	규칙 제 773호
일부개정	2018. 8. 9	규칙 제 926호
일부개정	2020. 1. 10	규칙 제 994호
일부개정	2022. 2. 28	규칙 제106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건축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7. 10. 5, 2014. 11. 24>

제2조(용인시 건축위원회) ① 용인시 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24>

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이때,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4. 11. 24>

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 11. 24>

[제목개정 2014. 11. 24]

제3조 삭제 <2018. 8. 9>

제4조 삭제 <2018. 8. 9>

제5조 삭제 <2007. 10. 5>

제6조 삭제 <2022. 2. 28>

제7조(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 청구 등) ① 삭제 <2022. 2. 28>

② 「용인시 건축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4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으려는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07. 10. 5, 개정 2014. 11. 24, 2018. 8. 9, 2020. 1. 10, 2022. 2. 28>

- 1. 삭제 <2022. 2. 28>
- 2. 삭제 <2022. 2. 28>
- 3. 삭제 <2022. 2. 28>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연 4회 매 분기 말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4분기의 수수료는 12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10. 5, 2018. 8. 9, 2020. 1. 10, 2022. 2. 28>

④ 삭제 <2022. 2. 28>

[제목개정 2022. 2. 28]

제8조(건축지도원)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을 20명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24>

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24, 2018. 8. 9>

③ 삭제 <2007. 10. 5>

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대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02. 12. 1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, 제424호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7. 10. 5 규칙 제55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1. 24 규칙 제77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8. 9 규칙 제92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. 10 규칙 제99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2. 28 규칙 제106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

[별표 1] 삭제 <2020. 1. 10>

[별표 2] 삭제 <2022. 2. 28>

[별표 3] 삭제 <2022. 2. 28>

[별지 제2호서식]

용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서

심의내용 :

1. 안 건 번 호 :

2. 제 목 :

3. 심의 요청자 :

심의결과 :

위원별 의견 :

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.

년 월 일

용인시 건축위원회 위원장 (인)

[별지 제3호서식] 삭제 <2020. 1. 10>

[별지 제4호서식] 삭제 <2020. 1. 10>

[별지 제5호서식] 삭제 <2014. 11. 24>

[별지 제6호서식] 내지 [별지 제10호서식] 삭제 <2007. 10. 5>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2. 28>

(겉지)

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 청구서

1. 대행 업무를 한 건축사			
성 명		면허번호	제 호
상 호		등록번호	제 호
주 소		전 화	
대행 업무기간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
2. 대행 업무 내용			
대행 업무건수			
대행 업무 수수료 청구 금액	일금	원정(₩)
산출 근거	별첨		
<p>「용인시 건축 조례」 제2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를 청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청구인 주소 : 성명 :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용 인 시 장 귀하</p>			
첨부 : 건축사 대행 업무 내역서 1부			

(속지)

건축사 대행 업무 내역서

일련 번호	허가일자	위 치	용 도	착공일	대행 업무 수수료 ($Y=L/8 \times T \times D$)	담당공무원 확 인
	(허가번호)	건축주	연면적	사용검사일		

작성자 : 대행 업무 건축사 (인)

※ $Y = L/8 \times T \times D$

Y : 수수료

L/8 = 기술사 노임단가(시간당)

T : 현장검사 소요시간

D : 건축물의 종별 용도 난이도 비율